

문서번호	안전치수과-1383
결재일자	2016.1.29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방침번호	

★ 주 무 관	안전재난관리팀	안전치수과장	안전건설교통국	부 구 청 장
유취성	허현도	남궁용	이학구	01/29 정연찬
협	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	도시계획과장 조남성	감사담당관 구승희	
조	도시재생과장 전제선	건축과장 유옥현	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 오반교	
	공원녹지과장 이종한			



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

- 추진기간 : '16. 1. 27 ~ 3. 31
- 추진부서 : 안전치수과 외 6개 시설관리부서
- 주요내용 : 「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지침(국민안전처, '16. 1)」
 -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관리팀 운영
 - 용벽 등 위험시설물 일제조사 및 집중관리대상 지정관리
 -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

안전건설교통국
(안전치수과)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토여부	비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)	
사업추진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 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 협조 ()
이해관계인 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자원 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 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조 ()

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

해빙기를 맞이하여 옹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□ 관련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 재해예방조치)
-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경감 대책(UN ISDR) 연계 위험시설 재해경감 개선

□ 추진 필요성

- 겨울철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체적팽창으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고 계절전환기의 융해는 지반침하 등을 발생시켜 시설물 붕괴요인으로 작용

<6년간 전국 해빙기 붕괴사고 현황>

구분	총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발생건수(건)	17	8	4	3	1	1	-

자료출처 → 국민안전처 발간 2015년 통계연보

※서울시의 경우: 총 6건(건설공사장 3건, 축대·옹벽 2건 기타 1건)

⇒ 해빙기 위험시설물 조사·점검 및 담당자 안전관리 교육 등 예방활동 필요

II 추진방향

-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시설물 전담관리팀 운영
- 「국가안전대진단」 연계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조사·점검 및 지속관리
- 공사장 업무 담당자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홍보 실시

Ⅲ

추진계획

「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지침(국민안전처, '16. 1)」 사항

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관리팀 운영

※ 국민안전처 주관, 지방자치단체 「재난관리실태 평가」 자료로 활용

○ 해빙기 상황관리체계 구축·운영

- 상황근무조 편성 : 기간 중 매일 부서별 2인 1조(6개조 편성) 상황근무

부서	일자리경제	주택	도시재생	건축	공원녹지	도로관리	안전치수과
인원	2명	2명	2명	2명	2명	2명	2명

- 상황근무 기간 : 2016. 2. 15 ~ 3. 31

- 상황근무 내용

- 평일 : 주간 일반업무 병행추진 및 위험시설물 순찰 등(야간 종합상황실 연계)
- 주말, 휴일 : 비상연락체계 확립, 종합상황실 근무자 상황접수
- 기상특보(한파, 대설) 시 : 집중관리대상 및 위험시설물 긴급점검 실시

○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전담관리팀 운영 (상황근무 연계)

- 전담관리팀 편성

- 안전치수과(총괄) : 안전치수과장, 안전재난관리팀장, 시설담당 2명
- 시설관리부서(조치) : 시설관리팀장, 담당자 2명(기술직 우선지정)

- 주요 운영내용(일반업무 병행추진)

- 위험시설물 발견 시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보강 등 응급조치
- 필요시 대피명령 및 위험요인 조치사항 보고(국민안전처, 서울시)

점검 착안사항

- 축대·옹벽·석축 : 기초지반 침하 발생 유무, 파손 및 손상, 균열 등
- 건설공사장 : 계측관리 실시여부 및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 변형 등
- 급경사지 : 지속적 낙석 발생여부, 낙석방지책, 망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

☐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일제조사 및 지정관리계획

● 집중관리대상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

- 조사기간 : 2016. 1. 28(목) ~ 2. 11(목)
- 조사대상 : 옹벽, 급경사지, 공사장, 과거 인명피해 발생시설

시설유형	대 상
옹벽, 석축 등	· 붕괴, 균열,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, 석축 등
건설공사장	· 해빙기 기간 중 굴착 공사 중인 건설공사장(터파기, 흙막이) ·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, 대형절성토 공사장
급경사지 등	· 주택가 등의 경사지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·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 포함
노후주택, 공가	· 건물노후화로 붕괴,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택
기타	·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및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지역 ·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

- 조사방법
 - 시설관리부서장 주관 전문가, 유관기관 등 합동조사반 편성
 -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및 서면조사, 현장확인 병행
-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
 - 기존 재난위험시설 9개소 및 금회 조사 시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은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·관리, 경미사항 현장조치

● 집중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사후관리 ('16. 2. 15 ~ 3. 31)

- 민관합동 책임관리자(공무원, 지역주민 등) 및 대피장소 지정 [붙임1]
- 주 1회 정기점검 및 기간 중 2회 이상 수시 안전점검 실시 [붙임2]
- 관리카드 작성 및 위험징후 발견 시 전담관리팀 제보 [붙임2]

☐ 해빙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실시

○ 업무담당자, 현장소장 등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

- 기간 : '16. 2. 1 ~ 2. 26 기간 중 1회 및 수시
- 주관 : 재난총괄부서(정기 1회)교육 및 인허가 부서별 소관 사업장 자체교육
- 대상 : 인·허가 및 시설관리부서 담당자, 건설현장소장 및 근로자, 지역주민 등
- 주요 교육내용
 -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에 따른 신고 및 안전점검·조치 방법
 - 전문강사(교수 등) 초빙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당부

○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전개

- 해빙기 대책기간 중 안전점검의 날 및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홍보 실시
 - 공사, 사업장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리플릿 비치
 - 국민안전처 해빙기 홍보동영상 및 행동요령 구 홈페이지, SNS 게재
 - ※ 리플릿, 홍보영상 등은 국민안전처 배포자료 활용

IV 협업사항

☐ 시설관리부서 및 인·허가부서

- 위험시설물 조사결과(책임관리자 등), 비상연락망 제출 ⇒ '16.2.11 기한
- 안전관리교육 시 담당자 필수 참석 및 소관 공사장 자체 안전관리 교육 실시

☐ 전 부서 및 동 주민센터

- 해빙기 위험시설물 발견 및 안전사고 발생 즉시 제보 및 교육 참석
- 동 주민센터는 안전점검의 날 연계 민원실 및 동 공사현장에 리플릿 비치

- 붙임 1. 해빙기 위험시설물 조사결과 및 비상연락망 서식 1부.
2. 사고보고서 및 해빙기 안전점검 착안사항 등 각 1부. 끝.